

클럽 이용약관 및 준수사항 동의서

클럽 준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2022.12.09.개정)를 근거로 작성 하였으며, 이를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향후 88컨트리클럽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클럽의 회원자격 제한 및 제명, 이용제한 등 약관에 따라 제재 결정이 되면 이를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가. 회원자격제한 및 제명

- ① 골프장이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 ② 도박성 골프, 음주, 공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골프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③ 직원 및 경기보조원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 폭언, 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 ④ 클럽 내 자산(수목, 그린, 비품, 시설물 등) 일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및 파손시킨 경우
- 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클럽의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케 하였을 때
- ⑥ 회사 또는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폭행(폭언) 및 협박 등 위협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⑦ 회원권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⑧ 중범죄의 유죄판결 및 사회적 비난이나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회원으로서 품격을 손상하였을 경우
- ⑨ 클럽에 대한 금전납부의무(클럽이용료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⑩ 본 회칙 및 이용약관을 3회이상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통념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는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 할 수 있다.

나. 이용제한

- ① 천재지변, 국가·사회 안보상황의 현저한 변화,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대회 또는 행사, 골프장의 유지보수 등의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환불규정

-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 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전액
 -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수)}

라. 면책조항

- ① 경기진행 및 골프카 사용 책임
 - ㉠ 경기보조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리하거나 경기를 하다가 다른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경기진행 중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거나 안전 등의 사유로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및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당 클럽의 경기종료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자가 책임을 진다.

- ㉔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 이용자가 맞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하며, 동반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 ㉕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낼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㉖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 ㉗ 경기진행중 경기자는 반드시 골프카 사용 안전수칙에 따라 골프카를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골프카 제반 안전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단,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안전관리 책임

- ㉘ 모든 이용자는 안전관리규칙 및 준수사항의 미숙지 또는 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㉙ 이용자는 해저드, 경사면 등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경기보조원의 허가없이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단, 사업자 및 사업자의 이행보조자 및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㉚ 내장객의 승용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③ 휴대품의 관리 책임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프론트 또는 본 클럽이 정한 귀중품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해야 함. 단, 본 클럽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④ 골프채의 확인

㉠ 경기 전·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훼손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서명 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는 분실·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분실·훼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분실·훼손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기종료 후 골프채를 차량에 상차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경기 보조원과 동반하여 상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렛파킹 경우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골프채를 인계한 이후에는 분실·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시설물 및 장비의 훼손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고령자 또는 고혈압 및 기저질환이 있는 이용자는 단독으로 골프장 내 시설물 (목욕탕 등) 이용을 자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회사가 안내한 이용시간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고 시설물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2. 본인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고, 88컨트리클럽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합니다.

20

입회신청자 : (인)

88컨트리클럽 귀중